



#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는 신중을 기해야

감염병 사태 발생 시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오 권건보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kwonbo@ajou.ac.kr

# 확진자정보의 신속한 공유·처리는 중요하나,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는 신중해야

감염병 사태 발생 시 공개대상정보·공유대상정보·  
정보처리의 집행체계 등에 있어서 혼선이 아기되지 않도록  
명확히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오 김현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hkyungkim@seoultech.ac.kr

## I. 문제의 상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라 함) 국내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였다. 확진자가 어떤 사람이고 사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었고 어떤 사람과 만났는지 파악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다면,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그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스스로 체크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확진자의 신상정보가 너무 상세하게 공개될 경우에는 확진자나 그 접촉자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가

훼손될 위험성도 수반된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그 확진자의 나이, 성별, 성씨, 학교, 집 주소의 번지, 이동경로, 접촉자의 신상 등이 공개되는 바람에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주위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거나 온라인상에서 그들을 둘러싼 온갖 억측이 난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상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대중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우려가 존재한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를 가급적 많이 공개할수록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개인정보의 공개가 언제나 반드시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결국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의 공개가 어느 범위에서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I. 들어가며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확진자 및 관련자들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방문장소,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국내·외 언론은 신속한 감염병 정보 처리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성공적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❶

반면 과도한 정보공개로 확진자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부인과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처제만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진자 A씨와 처제의 사이가 "불륜이 아니냐."는 억측에 시달렸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B씨는 특정 시간대에 노래방을 수차례 방문한 동선이 공개돼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나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감염자 정보공개 조치가 금번 코로나 사태의 성공적 대처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공개로 신상털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사례를 본받으려는 경우와,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는 지양해야 한다는 신중론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의장은 3월 16일 '코로나19 맥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장 성명서'에서 코로나19 대응시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처리에 있어서 필요성·적절성·비례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법적 구제

1) “美 매체 “전염병에 준비된” 한국, 멘트스 경험 모범”, 미니튜데이(2020.4.23.) <https://news.mt.co.kr/mview.php?no=2020042310541815043>; “민주성+선진 의료+특명한 정부...외신 한국 코로나19 대응”, 인사혁신처(2020. 3. 10.) [https://blog.naver.com/mirae\\_saram/221846539965](https://blog.naver.com/mirae_saram/221846539965)(2020.5.4. 최종확인)



## II.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의 주체가 타인에게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알린다면 언제,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전달할 것인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독자적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다.<sup>①</sup>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sup>②</sup>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에는 정보주체가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하고, 정보처리기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정정, 차단, 삭제, 처리정지 또는 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분석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의 공권력 작용을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혹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개가 감염병의 예방이나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를 받을 권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최근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인 '코비드세이프(COVIDSafe)'를 출시하였다. 코비드세이프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1.5M 근방에 있는 앱 사용자 간에 연락처를 저장, 암호화한다. 만일 특정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사용자와 15분 이상 접촉한 사용자에게 앱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잠재 위험을 전한다. 해당 앱은 사생활 침해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자발적 동의하에 하루 만에 20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sup>③</sup>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에 대비한 확진자 개인정보의 처리와 사생활 보호 간의 합리적 균형점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하에서는 그 균형점 모색의 시발점으로서 정보공유의 중요성

과 정보공개의 신중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II. 감염병 확진자 정보 공개·공유 법령 현황

한국은 메르스 사태 당시 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중 39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보건당국이 폭넓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염병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2016년 1월 7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국민에 대하여 감염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과 둘째,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범위의 확대다. 특히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이 어떻게 수집, 처리되는가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위기담당소통관은 'BBC Korea'와의 인터뷰에서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동선을 구성한 뒤,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검증을 위해 GPS 경로,

1)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2)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헌재 2012. 12. 27. 2010헌마153 등 참조.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0743.html](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0743.html)  
(2020.5.4. 최종확인)

위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선 그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이나 확산 차단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러한 공개의 방법, 대상 또는 범위, 기간 등에 있어서 적절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 III.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의 법률상 근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은 감염병 환자의 건강상태나 동선정보, 접촉자 정보로서 이를 다른 정보와 결

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상의 ‘개인정보’에 속한다. 특히 감염병 확진 여부는 특정인의 건강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도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그러한 개인정보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처리’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제한(제18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 등과 같은 조항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를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동

CCTV 화면, (신용)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동선을 재구성한다고 언급하였다. 공개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해당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GPS경로, CCTV 화면을 통해 확진자의 이동/영상정보를 수집 등 처리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인 카드사로부터 이용내역을 제공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공개의 확대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계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4조의 2 제1항).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다. 이러한 공개

정보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과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소셜 네트워크상으로 진짜와 가짜가 섞인 정보가 급속히 퍼져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급속히 증폭되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나 추후 메르스 환자 동선에 있는 병원 24곳의 명단을 밝히고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습과 진정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sup>3)</sup>고 언급하면서 사회 혼란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감염병이라는 국가 혼란 상황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 스스로 시급한 예방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러한 공익을 위해 감염

3) 이경호, “[포럼] 정보관점에서 본 코로나와 메르스”, 2020. 2. 25.,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22602152369061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22602152369061001)



법 제18조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긴급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아닐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동 조항이 2015. 7. 6.에 신설됨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초

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의 성별, 연령, 주소, 근무처,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는 것은 현재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를 직접적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IV.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의 허용 범위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의하여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로서, 이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병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입법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가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범위가 무한 확장될 우려가 있다. 감염병 환자 자체에 대한 정보(성명, 성별, 직업, 나이 등)가 반드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등’에 해당될 수 있다. 즉 대상정보가 예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오직 보건복지부장관 재량에 따라 공개대상정보가 결정되므로 대상정보의 범위에 좀 더 신중을 기할 묘안이 필요하다. 물론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나, 이는 이미 공개된 후 즉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진 이후 사후적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은 한계가 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범위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확대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처를 위해 정부

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도 확대하고,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집 대상 정보가 확대되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물론 진료기록,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등 사용명세, CCTV의 영상정보, 위치정보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이 정보제공요청의 대상이다. 의료기관은 물론, 신용카드회사, 위치정보사업자, 통신사업자, 모든 CCTV설치·운영자가 포함된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

는다고 해석된다. 설령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적용배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의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예방법 제6조에 따라 관내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해 왔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의 나이, 성별, 성씨, 학교, 집 주소의 번지, 이동경로를 공개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확진자가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

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되는 바람에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주위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특정 종교의 교인이나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공공연히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확진자와 접촉자의 경우 불륜 사이로 의심받거나 노래방 도우미일지 모른다거나 하는 등의 악플과 오해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확진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세세한 공개가 개인에게 사생활 침해나 인격적 가치의 훼손 등 정신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바이러스 감염 그 자체보다 확진자로 소문이 나서 혐오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한다는 조사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염병 환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개가 오히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야 한다(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법, 통신비밀 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위치정보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공대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 인적사항
-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
- 출입국관리기록
-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명세
  - 교통카드 사용명세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다음으로 정보 공유기관이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 기본법」 제3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과 그 밖의 단체 등에 제공할수 있다(법 제76조의2 제3항).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감염병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언제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반면에 세세한 개인정보의 공개로 과도한 비난과 근거 없는 억측, 내밀한 사생활 노출 등을 초래할 경우 병마와 싸워내야 하는 확진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확진자가 입게 될 피해가 공익에 비하여 가볍다고만 강변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감염병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3월 9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sup>③</sup>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역별 공개 범위의 편차로 인한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3월 14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여기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사항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개의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로 한정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경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시간적으로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하되, 증상

### III. 감염병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중요, 그러나 정보공개는 신중

국가는 각종 질병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처리는 중요한 핵심 업무이다. 관련 기관 간에 정보의 공유 및 제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기화로 일각에서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생활 침해적 요소는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로 인한 것이지, 감염병 대책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보처리 및 공유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는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구축해 왔고 이는 선진적 행정 및 민원처리의 기초가 되었다.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정부 대응의 특징은 관련 감염정보의 조속한 수집, 처리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격리 및 예방대책의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감염병과 관련된 수집 대상 정보의 확장으로 의료기관은 물론, 신용카드회사, 위치정보사업자, 통신사업자, CCTV설치·운영자 등으로부터 조속한 정보수집이 가능했다. 또한 복지부를 비롯한 재난 대응 정부기관, 지자체,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병의원 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기관 간 신속한 협업 및 업무대처가 가능했다.

감염병 정보의 빠른 수집, 처리와 공유는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 핵심업무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정보의 공개와 감염병정보의 수집처리는 그 이용범위와 목적이 다르다. 정보공개는 일반국민

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소와 이동수단은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곳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곳을 공개하도록 하고,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④</sup>

이러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조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확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의 공개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침해와 관련된 논란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는 어디까지나 권고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가질 수 없기에 여전히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의

정도나 수준에 있어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 V. 맺음말

아무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나 동법 시행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20. 8. 5. 개인정보의 콘트롤타워로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그러한 입법의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정부는 정보공개의 종류와 방법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

을 대상으로 하나, 정보공유는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간에 이루어 진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정보공유는 긴급을 요하는 국가의 업무처리를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감염병 정보 수집·공유는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비하면 비교적 사생활 침해적 요인이 덜 하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다만 정부의 집중화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집적이 후일 국민감시의 수단 혹은 국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강력한 모니터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IV. 나가며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가 전 세계적 관심과 찬사를 받는 반면, 확진자 정보 및 동선

공개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정보의 공개 및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간의 균형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대책을 모색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대국민 정보공개'와 '정부의 감염병정보 수집·공유'는 그 이용범위와 목적이 다르다는 점이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 당국이 수집하여 관계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것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보의 공개는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이며,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 예방노력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민 스스로 감염병 경로를 회피함으로써 감염병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켜야 하는 정부의 공익적 목적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대국민 공개이니만큼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매우 크므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특히 그것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채워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되, 자가격리 위반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률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인체에 부착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안심밴드 도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정부가 감염병 정보를 수집·처리 하는 것은 대국민 긴급 행정의 일환으로서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사태를 조기 종식하고자 하는 행정업무의 처리이다. 공유 대상 또한 일반 국민이 아니라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비하면 사생활 침해적 요인도 비교적 덜하다. 다만 정부가 집적된 정보를 국민감시 등으로 오남용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관련 정부기관 간에만 공유되어, 일반국민에게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의 구분이 필요하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나, 환자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은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간에 반드시

격리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시킬 것을 경고한 데 따른 동의라면 그것은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법률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인체에 부착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안심밴드 도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해야 할 정보이다. 감염병 사태 발생 시 공개 대상정보·공유대상정보·정보처리의 집행체계 등에 있어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